

# 사례로 보는 부당집행

---

2020.07.22  
정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정길

---

# Contents

1. 인건비
2. 연구시설 장비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재료비
5. 연구수당
6. 위탁연구개발비
7. 간접비



# 비목별

## 부당집행 사례

# 인건비

A 대학교병원에서 모든 참여연구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한 사례

1

case

(적용기준)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므로 간접비에서 집행

(정산결과) 인건비에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0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02) 미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 03)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04)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05)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 06) 현물부담 부족액
- 07)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자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지급액
- 08) 1년 미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
- 09)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10)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11)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12)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인건비

## case 2

중소기업 신규채용인건비 예산을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적용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금액 불인정

(정산결과) 해당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지급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전액 불인정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13)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14)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15)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16)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17)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 18)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외부인건비)
- 19)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 20)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21) 직접비에서 집행한 연구중심병원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 22)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 23)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을 진흥원의 승인없이 해당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한 경우 (전담기관 승인사항)

# 인건비

case

# 3

중소기업 신규채용 A 연구원의 예산을 또 다른 신규채용 B 연구원에게 승인없이 집행한 금액

(적용기준)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을 진흥원의 승인없이 해당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한 경우

(정산결과) 해당 B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전액 불인정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0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02) 미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 03)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04)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05)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 06) 현물부담 부족액
- 07)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자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지급액
- 08) 1년 미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
- 09)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10)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11)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12)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인건비

## case 4

인건비 집행금액(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이 해당과제 참여율대비 초과되어 집행된 금액

(적용기준)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정산결과) 참여율대비 초과되어 집행된 금액분 불인정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13)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14)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15)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16)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17)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 18)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외부인건비)
- 19)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 20)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21) 직접비에서 집행한 연구중심병원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 22)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 23)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을 진흥원의 승인없이 해당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한 경우 (전담기관 승인사항)

# 학생인건비

1

case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집행금액을 당해년도 사업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해당월 지급액 전액을 지급한 경우

(적용기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 사업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지급한 지급액 불인정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01)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 0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0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04)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 05)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06)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 07)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08)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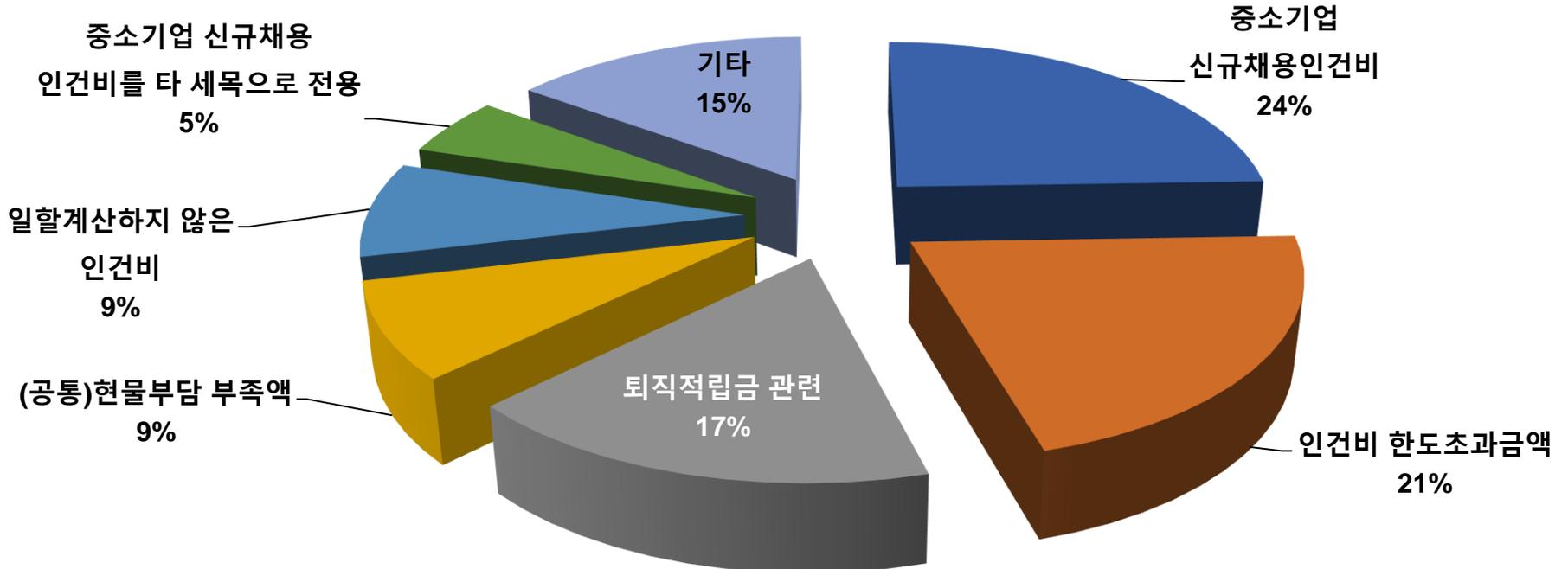
1. 부당집행 사례

# 사유별 부당집행 비율

##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No.	부당집행 사유
1	사전 승인 없이,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한 경우
2	인건비 한도초과금액(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충 한도초과 등)
3	퇴직적립금 관련(1년 미만 참여연구원의 퇴직적립금)
4	(공통)현물부담 부족액
5	일할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6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를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
7	기타

사전승인없이 집행한



# 연구시설 장비비

# 1

H 기관에서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설치한 사례

(적용기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case (정산결과) 해당금액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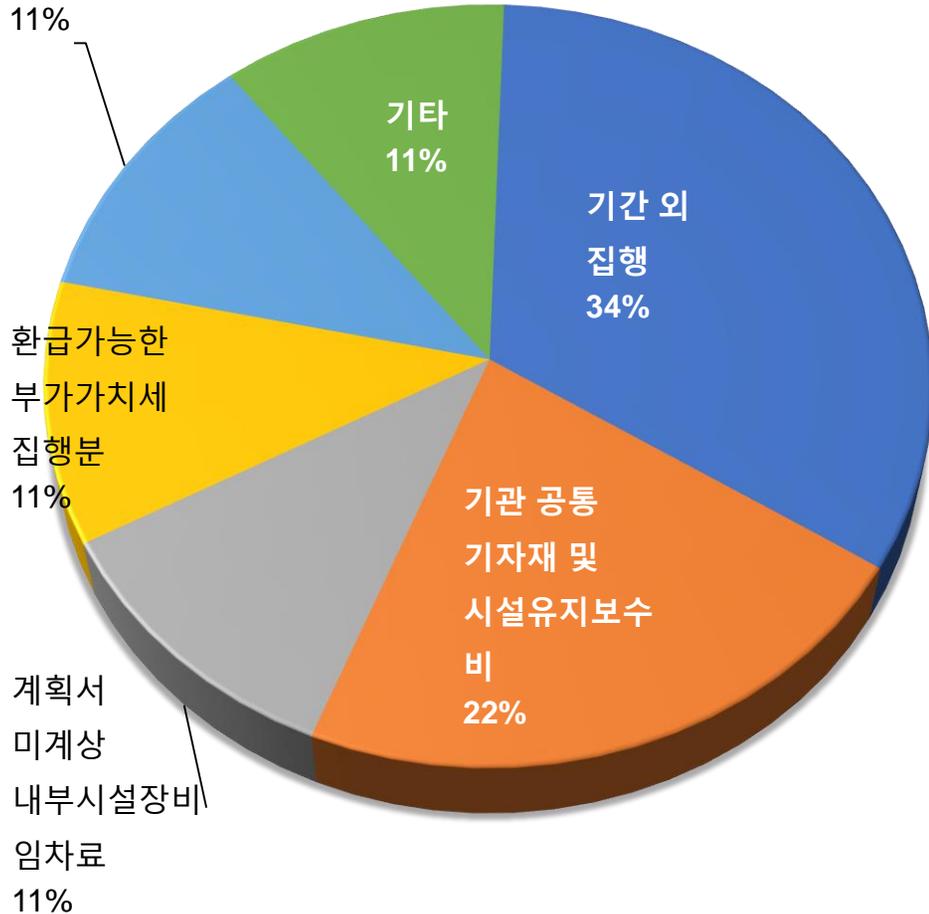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0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0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 03)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 0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0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06)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0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 계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08)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0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 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잔여내용연수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이거나, 취득원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 11)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12)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1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이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제외)의 10퍼센트 초과한 금액

# 사유별 부당집행 비율

##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전문기관 미승인  
집행금액(3천만원  
이상)  
11%



No.	부당집행 사유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2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4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집행
5	오류로 인한 중복지급액
6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집행
7	미참여 연구원의 장비 사용료

# 연구활동비

# 1

case

1세부 과제에서 2세부 참여인력과 같은 소속부서 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적용기준) 전문가활용비(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정산결과) 해당금액 불인정

## <국내외 출장여비>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 01)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02)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 0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04)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 05)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06) 부실학회(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으나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 참가 관련 여비
- 07) 여비집행기준 위반하여 집행한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08)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 09)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 10)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11) 위탁과제의 경우, 사용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발생으로 인한 매출 부가가치세 재계산분

# 연구활동비

## case 2

부실학술대회와 관련된 학회 등록비 및 국외여비를 집행한 경우(WASET, OMICS 등)  
**(적용기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산결과) 부실학회 등록비 및 참석 여비 전액 불인정**

### <기술정보활동비>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 1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1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15)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16)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1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1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19)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20) 부실학회(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학회의 형식(발표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으나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 참가비
- 21) 연구계획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승인받지 않은 기술도입비(현금, 현물 포함)
- 22) 해당과제 참여 세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 연구활동비

# 3

안전관리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집행금액

(적용기준)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정산결과) 직접비에서 집행한 간접비성 비용 불인정

case

해당연구 논의를 위해 이자카야 및 호프로 분류된 가게에서 집행된 회의식대 혹은 참여연구원 야근식대

(적용기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정산결과) 주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 미제시로 해당 집행분 전액 불인정

# 4

case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23)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단, 시험. 분석. 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

## <특허정보조사비>

24)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25)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연구활동비

## case 5

연구책임자 1인, 외부인력 1인, 그 외 해당 연구과제 미참여 학생연구원 다수가 집행한 회의비 (정산결과) 내부인원간 회식의 성격이 강한 회의비 집행으로 판단되어 소명요청을 보낸 결과 불인정을 인정하여 반납 함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 이내이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하지 아니한다.**

26)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2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28)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29)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3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31)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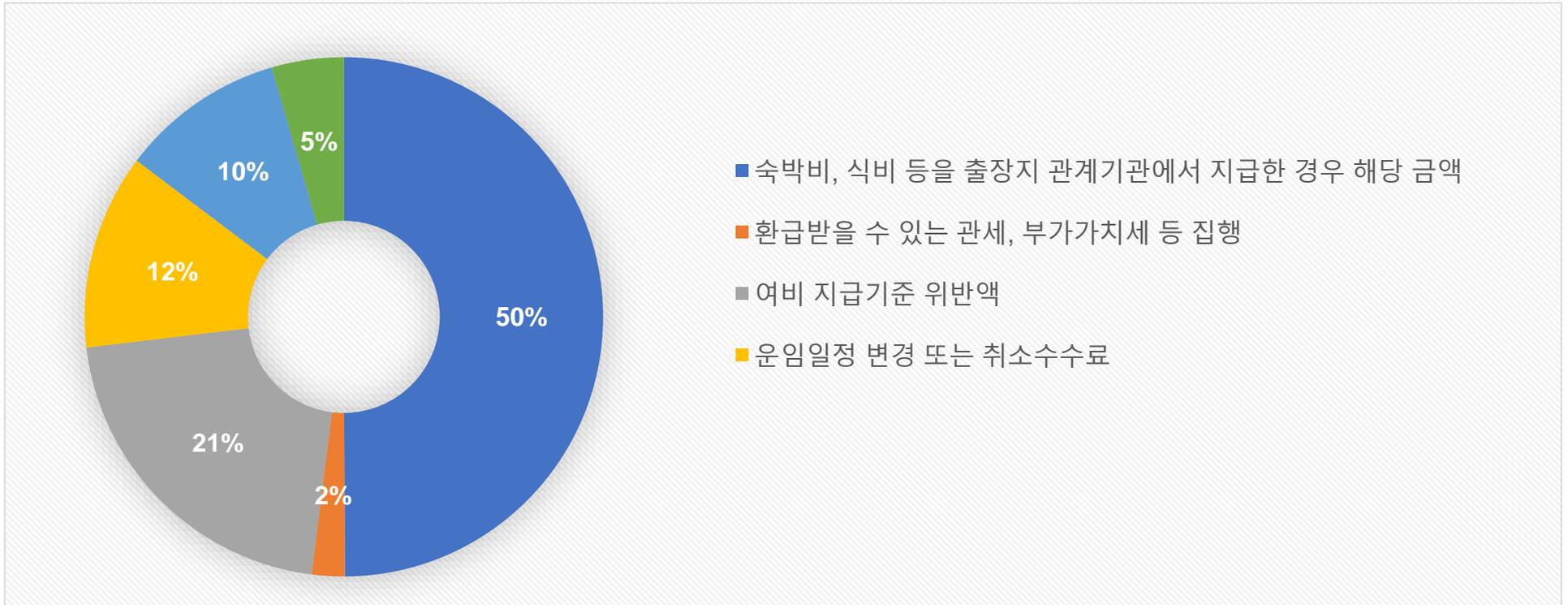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32)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33)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사유별 부당집행 비율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집행
- 여비 지급기준 위반액
- 운임일정 변경 또는 취소수수료

No.	부당집행 사유
1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2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집행
3	여비 지급기준 위반액
4	운임일정 변경 또는 취소수수료
5	유형성 경비가 포함된 (주류가 포함된) 회의비
6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 연구재료비

## 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01)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0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03)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04) 환급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집행분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05)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1

case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적용기준)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정산결과) 집행금액 전액 불인정

# 2

case

연구재료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 승인 받아 당해연도 연구비 예산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중에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적용기준) 직접비는 동일세목으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 직접비와 연동되는 세목인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는 이월불가

(정산결과) 이월 승인된 사용용도 이외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 불인정

# 연구재료비

주관기관 A 대학교, 2세부기관 A대학교병원

주관기관에서 A대학교 소속 내부시설에서 시약 구입하고 A대학교병원에서도 비품을 구입한 경우

(적용기준)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은 불인정이나,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 수행기관 소속 내부시설에서 실험동물 구입 / 간단한 시약 및 비품 등 구입의 경우는 첨부 사유와 증빙을 충족하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 시 불인정 하지 않음

(정산결과)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은 불인정이나, 예외적으로 A대학교 소속 내부시설에서 시약 구입한 경우는 비영리법인 수행기관 소속 내부시설에서 구입한 경우로 인정대상의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 확인 후 인정함

그러나 A대학교병원에서 비품을 구입한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거래 이므로 불인정

## case 3

인정대상	비영리법인 수행기관 소속 내부시설에서 실험동물 구입	비영리법인 수행기관 소속 내부시설에서 간단한 시약·비품 등 구입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1. 세목별 집행내역서 검토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기준 ⑧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시설 청구서에 해당 과제명이 기입되어 해당 과제 실험을 위한 구입임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요 수량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불필요한 구매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구입에서는 다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입이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li> <li>구입 재료의 특성상 연구자 개인이 구입하기가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li> <li>외자 구입을 하여야 하는 재료의 경우 구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li> <li>내부시설 청구서에 해당 과제명이 기입되어 해당 과제를 위한 구입임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요 수량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불필요한 구매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li> </ul>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사유서</li> <li>내부시설이 국내·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실험동물 구입이 수행기관 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li> <li>수행기관 내부에서 실험동물의 반입과 반출을 관리하는 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사유서</li> <li>내부시설이 국내·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시약·비품 구입이 수행기관 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li> <li>수행기관 내부에서 시약·비품의 반입과 반출을 관리하는 대장</li> <li>외부구입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함을 입증할 비교견적서 2개 이상</li> </ul>

# 연구수당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0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0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0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0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0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X(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 직접비 집행비율 : (통합 EZbaro 적용사업)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06)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07)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08)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09)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연구수당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1

case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인건비 계획보다 실 집행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용하고,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인건비의 20% 그대로 집행한 사례

(적용기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 (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정산결과) 실집행 인건비 대비 20% 초과 집행분 불인정

# 연구수당

## 부당집행 기준 및 불인정 사례

※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0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0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0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0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0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X(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통합 EZbaro 적용사업)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06)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07)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08)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09)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연구수당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2

case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연구수당

(적용기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연구수당 전액 불인정

# 사유별 부당집행 비율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No.	부당집행 사유
1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연구수당
3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 1 case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40%를 계상하여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한 사례

(적용기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40%를 초과 계상·집행한 금액

(정산결과) 연구계획 당시, 위탁연구비 계상에 오류가 있었지만 연구계획이 승인되어 진행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 집행한 금액 불인정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0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 집행금액

02)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사항

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불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

# 사유별 부당집행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No.	부당집행 사유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 집행금액
2	위탁연구개발비 환급가능한 부가세를 재료비로 전용한 금액



# 간접비

## 1

case

간접비 고시비율 초과 집행 금액

(적용기준)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정산결과) 간접비 계상 시, 천원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상하여 초과된 간접비 집행분 불인정

## 2

case

연구개발계획서에 미 계상된 간접비를 자체예산 변경하여 집행

(적용기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정산결과) 불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 01) 간접비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 02)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03) 영리법인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04) 영리법인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명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05)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간접비

case

# 3

A기업에서 계획서상 연구지원비만 간접비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특허출원비로 집행한 사례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 특허출원비는 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하므로 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명목으로 불인정

## 부당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 01) 간접비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 02)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03) 영리법인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04) 영리법인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명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05)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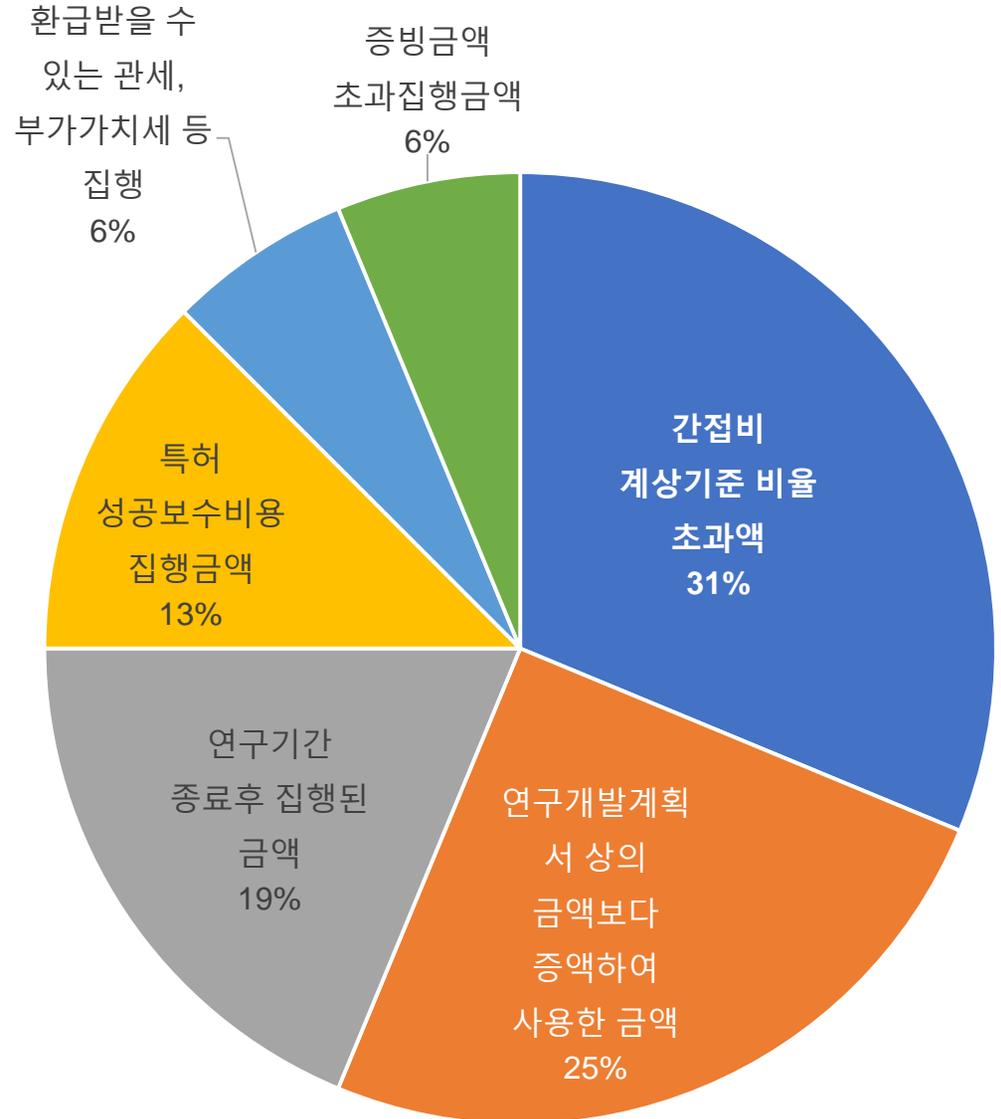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사유별 부당집행 비율

## (정동회계법인) 부당집행 사유별 부당집행 대표유형

No.	부당집행 사유
1	간접비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2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3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된 금액
4	특허 성공보수비용 집행금액
5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집행
6	증빙금액 초과집행금액



A close-up, low-angle shot of a computer keyboard, viewed from a slightly elevated perspective. The keys are dark with light-colored characters, and the entire image has a strong blue color cast. A faint white grid is overlaid on the image, and several small, bright white starburst light effects are scattered across the scene. The text "Thank you!!" is centered in a white, serif font.

**Thank you!!**